중원대학교 재학생 차량이용 지침

교학지원처 학생장학팀
Tel. 043-830-81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원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교통관리"란 중원대학교 캠퍼스 내 차량의 출입파악, 주차관리 및 교통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원대학교를 출입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내출입을 금한다) 및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관리원칙) ① 캠퍼스 내 차량 수가 주차장 수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캠퍼스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출입차량의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하여 재학생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① 재학생 중에 차량이용자는 학생장학팀에서 주차등록신청서와 차량등록증을 구비하여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등을 등록하고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한다.

② 차량이용자의 차량 등록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다. (주차위반 시 벌금 10만원)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용된 구역에만 주차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발급받은 차량스티커를 차량보조석 기준으로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하며, 차량스티커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3. 캠퍼스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시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하물며,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각종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의 귀중품은 자기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교통관리에 필요한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경고장 등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이용자 준수사항을 어길 시 캠퍼스 내 차량 진입을 해당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다.

1. 캠퍼스 내에서 안전에 지장이 있는 운행을 하는 경우 : 1개월
2. 월 3회 이상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개월
3. 교통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제7조(출차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캠퍼스 내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

② 캠퍼스 시설물 또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③ 관련 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출입정보가 없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차량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퍼스의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중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학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면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지진,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피해

② 차량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하는 피해

③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

제10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경우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